

**‘99. 11. 10. (水) 10:00**

( 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)

**’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**  
**— 심 사 보 고 서 —**

**행 정 사 무 감 사 특 별 위 원 회**

# '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심사보고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초 안 작 성: 전문위원실
- 나. 협 의: '99. 10. 18( 운영위원회 )
- 다. 상 정: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( '99. 11. 6 )에 상정.

## 2. 제안설명 요지( 제안설명: 전문위원 김진록 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김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### 나. 주 요 골 자

- 감사목적: 시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,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통하여,  
  
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.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,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- 감사기간: '99. 12. 2 ~ 12. 8( 7일간 )
- 감사위원: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근외 16명
- 감사대상부서: 시본청. 사업소. 읍면동. 김제개발공사( 총 43개부서 )

- 감사범위: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김제시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로 '98. 11. 1일 이후 처리된 사무.  
( 단,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)
- 감사장소: 회의실( 본청 - 1청사 3층 회의실 ) 또는 업무관련 현장
- 감사방법: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,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병행

### 3. 작 성 요 지( 보고자: 간사 고성곤 )

-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자료제출 요구안은 전문위원이 초안 작성한 원안대로 시행하고,
- 실과소에 대한 중복.편중감사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함.
- 특히, 감사시 수감대상자는 실과소장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, 업무담당 주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현지방문의 방법은 본청감사는 개별적으로 자유스럽게 하고, 읍면동은 현장위주 조별로 실시하도록 하였음.

### 4. 심 사 결 과

- 총 17명 위원중 11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.